

## ■ 정책 동향 ■

## 금융회사 회생·정리 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 확정

심희정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30일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 주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을 발표하였습니다.

## 1.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 및 대마불사(大馬不死)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회생·정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를 지정하여, 위기 상황을 고려한 회생·정리계획을 매년 작성·유지하도록 하고, ②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채권자 bail-in 제도)를 도입하고, ③ 회생·정리 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에 의한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종결권을 일시정지(temporary stay)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호주 등 미도입 국가들의 입법 동향을 보아가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중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 다운로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 주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보도자료